

심 사 보 고 서

○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54
----------	-----

2016.10.14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6일

-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진형)

가. 제안사유

○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

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

□ 출연 예정금액 : 118,009천원(도비 100%)

○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

○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- '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86,730,482천원 × 1.5/10,000 =118,009천원

□ 출연계획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02,186	102,186	0	118,009	15,823

3. 검토보고 요지

○ 이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으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○ 다만,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보다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이나 학술행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」

의안번호	제 454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10월 일 (제 351 회)

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9월 27일

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4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9월 27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출연목적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
- 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

출연 예정금액 : 118,009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
-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- '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86,730,482천원 × 1.5/10,000 =118,009천원

출연계획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02,186	102,186	0	118,009	15,823

3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 (세정팀)	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안석영	이강근	이영태	220-2753
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				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허동훈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서울 영등포구, (현원/정원) 28명/35명 (주요사업)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															
출 연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18,009천원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 (기준보조율)</th> <th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6년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7년 (C)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증감 (D=C-A)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(A+B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당초(A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경(B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비(100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2,18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2,18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8,00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,82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</p>	구 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도비(100%)	102,186	102,186	0	118,009	15,823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											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											
도비(100%)	102,186	102,186	0	118,009	15,823											
출 연 필 요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 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세기본법」 146조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4조 							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 (총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음. 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 2. 출연대상 기관현황 3. 출연 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

1. 사업평가 결과 및 부서 검토의견서

□ 이사회 결산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의견

- (이사회 결산감사) 2015년 사업과 예산집행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 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, 연구수행 시 관련학회 등과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필요가 있고, 불용예산으로 적립되는 누적 기금의 적절한 운용 방안 마련 필요가 있음
- (회계법인 감사의견) 2015.12.31. 현재의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

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 편성 반영이 필요함
-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

□ 출연금 요구 검토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6년 (C)	2017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
출연금	102,186	118,009	118,009	-	15,823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2. 출연대상 기관현황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」 145조 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				전화번호 : 02-2071-2720 홈페이지 : ww.kilf.re.kr		
주요연혁	2011.2 설립등기, 2011.4 연구원개원		기관형태		출연		
인원현황 (‘16.9월 기준)	계		정규직		입시직, 파견		
	51명		28명 (원장1, 부원장-, 본부장2, 연구위원13, 사무직12)		23명 (위촉연구원17, 파견공무원6)		
입원현황 (‘16.9월 기준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임기		
	이사장	허남식	(전) 부산광역시장		2014.03.28.~2017.03.27.		
	부이사장	송광운	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(원장)	허동훈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2014.04.15.~2017.04.14.		
	이사	최훈	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		당연직		
	이사	구본근	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	이홍범	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	김돈곤	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	신대호	경상남도 행정국장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	신창호	부산광역시 영도구 부구청장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	이승복	전라북도 김제시 부시장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	오도창	경상북도 영양군 부군수		2016.02.28.~2017.02.27.		
	이사	박완규	중앙대 교수		2015.02.28.~2017.02.27.		
	감사	조영진	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장		당연직		
	감사	조욱형	서울특별시 재무국장		2016.02.28.~2018.02.27.		
주요기능	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연금액 (단위:억원)		384 (설립이후 ‘16년까지 지자체 출연금액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억원)	연도	‘14년	‘15년	‘16년	재무현황 (단위:억원) ‘15.12.31.기준	자산	66 (자산 총액)
	예산액 ²⁾	83	74	84		부채	-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 ³⁾	76	71	82		자본	66 (이익잉여금)
경영성과 (단위:억원) ‘15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74			60		14	

3.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세정과		출연	118,009천원(도비)

□ 필요성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□ 출연개요

- 연구원 운영 예산('16년 84억원) 중 97%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□ 산출기초

- 출연 예정금액 : 118,009천원(도비 100%)
-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5/10,000를 출연
※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

【연도별 출연내역】

(단위 : 천원)

합계	'11년(설립)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452,372	51,834	51,834	81,151	85,034	80,333	102,186

※ '11~'12년 :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
'13년부터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반영 필요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

제145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11.12.31.>

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 <개정 2015.5.18.>

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- 제146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., 2013.1.1.>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1.12.31.>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- 제11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., 2013.1.1.>
1.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
 - 가. 1만분의 1
 - 나.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 2.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
 - 가. 1만분의 1.5
 - 나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-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.>
1.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. <신설 2010.12.30., 2011.12.31., 2014.1.1.>

1.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
2.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(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)에 출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2.30.>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2.30.>

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30.>